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양천구 목동 915번지(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 면 적 : 복개면적 82,500 m^2 중 6,900 m^2
- 지 목 : 유지
- 용 도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차량 차고지 및 관리사무소
- 허가기간 : 2018. 8. 18 ~ 2019. 8. 17(1년간)

○ 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 7. 20.

양 천 구 청 장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차량 차고지 및 관리사무실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8월 18일부터 2019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사용조건) 서울시와 양천구간의 양여계약서 제5조에 의거 무상사용하되 다만, 우리구에서 행정목적상 필요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4. 기타 우리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 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만료 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 (의무불이행시 부담)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구에서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4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연고권의 주장)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수허가자는 사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의한다.

